

제 295 회 거창군의회 제 1 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8.28 .)

2025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

목 차

I . 검토경과	1
II . 제출근거	1
III . 세입·세출예산 결산 총괄	1
1. 결산총괄	1
2. 세입결산	2
3. 세출결산	2
4. 세출·세입처리상황	2
5. 일반회계 세입결산	3
6. 일반회계 세출결산	6
7.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9
8.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	10
9. 계속비 결산	13
10. 예비비 지출	15
11. 다음연도 이월사업	17
IV . 기금결산	19
V . 채권액결산	21
VI . 채무액결산	23
VII . 보조금결산	24
VIII . 기타의견	25

2025 회계연도 결산 · 예비비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I 검토경과

- 제출일자 : 2026. 8. 14.
- 제 출 자 : 거창군수
- 회부일자 : 2026. 8. 18.
- 의안번호 :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제89호)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90호)

II 제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150조
-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III 세입 · 세출예산 결산 총괄

1. 결산총괄(결산서 p25)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현액	세입결산	세출결산	잉여금 (이월액)
합 계	975,468	978,701	810,359	168,342
일반회계	902,294	905,013	751,860	153,153
특별회계	73,174	73,688	58,499	15,189

2. 세입결산(결산서 p31)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계	975,468	983,857	978,701	549	4,607	100.3	99.5
일반회계	902,294	910,031	905,013	535	4,483	100.3	99.4
공기업 특별회계	43,019	42,722	42,623	12	87	99.1	99.8
기타 특별회계	30,155	31,104	31,065	2	37	103.0	99.9

3. 세출결산(결산서 p35)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 (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보조금 반납액 (F)	집행잔액 G=C-D-E-F
계	836,942	138,526	975,468	810,359	119,812	4,060	41,237
일반회계	775,698	126,596	902,294	751,860	109,131	4,039	37,264
공기업 특별회계	34,586	8,433	43,019	34,821	6,333	0	1,865
기타 특별회계	26,658	3,497	30,155	23,678	4,348	21	2,108

4. 세입·세출 처리상황(결산서 p38)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 현액	세 입 결산액 (A)	세 출 결산액 (B)	결산상 잉여금 ㉔=(A-B)	이월액 ㉕	보 조 금 반 납 금 ㉖	교 부 차 액 ㉗	현년도 채무상환 ㉘	순 세 계 잉 여 금 ㉙ = ㉔ - ㉕ - ㉖ - ㉗ - ㉘
계	975,468	978,701	810,359	168,342	118,974	4,061	5,651		39,656
일반회계	902,294	905,013	751,860	153,153	108,294	4,039	5,031		35,789
특별회계	73,174	73,688	58,499	15,189	10,680	22	620		3,867

5. 일반회계 세입결산(결산서 p44)

(단위 : 백만원)

과 목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정리보류액 (C)	미수납액 (A-B-C)
계	902,294	910,031	905,014	535	4,482
지방세수입	40,983	44,482	41,906	251	2,325
세외수입	23,593	27,177	24,753	284	2,140
지방교부세 등	323,797	324,001	324,001		
조정교부금 등	31,456	31,456	31,456		
보조금	260,657	260,356	260,356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21,808	222,559	222,542		17

- 일반회계 전체 미수납액 4,483백만원 중 99.6%인 4,465백만원이 자체재원에서 발생하였고,
- 그중 지방세는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3,499백만원 증가했으며,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보다 923백만원 증가하고 2,325백만원이 미수납되었음.
- 세외수입 역시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3,584백만원 많았지만 상당액이 실제 수납으로 연결되지 않은 상황임.
-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미수납된 사유는 납세태만이 2,017백만원 (86.7%)으로 가장 많고, 납기미도래가 1,198백만원, 무재산이 213백만원 순임.

* 결산서 3권 부속서류 p.31

- 정리보류액 535백만원의 주된 사유는 무재산이 229백만원 (42.4%)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평가액 부족 149백만원(27.8%), 행방불명 68백만원(12.7%) 순임.

* 결산서 3권 부속서류 p.25

- ☞ 납세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고액 체납자와 장기 체납자 관리 및 재산압류·공매 등 실질적인 징수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이며,
- ☞ 정리보류액은 당장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된 체납액이라는 점에서, 무분별한 정리보류가 이루어질 경우 실질적인 체납관리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리보류 결정의 적정성과 이후 사후관리가 중요함.
- ☞ 최근 3년간 징수결정액을 보면 예산현액보다 2023년도는 12,617백만원, 2024년도는 2,476백만원, 2025년도는 8,389백만원을 초과하였고, 매년 미수납액도 5,000백만원에 달하고 있음.
- ☞ 세입예산은 향후 재정지출의 근거가 되는 만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편성할 경우 실제 재정여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며, 반대로 징수 가능성이 낮은 세입을 과도하게 계상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최근 세입 추세와 징수 실적을 반영한 합리적인 세입추계가 필요해 보임.

□ [참고] 최근 3년간 세입결산 총괄

2023회계연도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계	983,778	996,395	990,665	674	5,056	100.7	99.4
일반회계	892,990	902,891	897,793	674	4,424	100.5	99.4
특별회계	90,788	93,504	92,872	0	632	102.3	99.3

2024회계연도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계	990,576	993,052	987,882	414	4,756	99.7	99.5
일반회계	924,504	923,569	918,754	414	4,401	99.4	99.5
공기업 특별회계	48,273	51,401	51,112	0	289	105.9	99.4
기타 특별회계	17,799	18,082	18,016	0	66	101.2	99.6

2025회계연도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계	975,468	983,857	978,701	549	4,607	100.3	99.5
일반회계	902,294	910,031	905,013	535	4,483	100.3	99.4
공기업 특별회계	43,019	42,722	42,623	12	87	99.1	99.8
기타 특별회계	30,155	31,104	31,065	2	37	103.0	99.9

6. 일반회계 세출결산(결산서 p86)

○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계	902,294	751,860	109,131	4,039	37,264
의회운영위원회	1,301	1,030	—	—	271
총 무 위 원 회	475,620	418,318	37,847	1,301	18,154
산업건설위원회	425,373	332,512	71,284	2,738	18,839

○ 부서별 내역(p.98~526)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합	계	902,294	751,860	109,131	4,039	37,264
의 회 사 무 과		1,301	1,030	—	—	271
총 무 위원회	소 계	475,620	418,318	37,847	1,301	18,154
	기획예산담당관	43,374	36,163	—	—	7,211
	전략담당관	43,381	18,855	23,966	—	560
	행 정 과	82,519	78,507	—	11	4,001
	인구교육과	34,217	25,954	6,587	3	1,673
	민원소통과	2,402	2,308	—	—	94
	재 무 과	4,462	4,378	—	—	84
	경제기업과	51,342	50,050	5	—	1,287
	문화예술과	17,949	13,281	4,381	41	246
	관광진흥과	9,618	8,193	1,271	—	154
	복지정책과	26,377	25,551	—	—	826
	행복나눔과	134,677	131,091	1,240	974	1,372
	보 건 소					

		보건정책과	8,686	7,780	397	148	361
		건강증진과	4,127	3,935	—	124	68
	읍 면		12,489	12,272	—	—	217
산업 건설 위원회	소 계		425,373	332,512	71,284	2,738	18,839
	안전총괄과		10,927	10,154	528	—	245
	산 립 과		39,761	31,069	8,128		564
	환 경 과		44,734	26,762	9,195	—	8,777
	건설교통과		95,068	75,172	16,801	—	3,095
	도시건축과		43,098	30,238	11,024	—	1,836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32,276	28,477	2,615	376	808
		미래농업과	18,271	12,694	4,715	216	646
		농업소득과	57,199	50,137	3,076	2,117	1,869
		행복농촌과	39,487	26,001	13,388	—	98
	수도사업소		22,668	22,095	298	—	275
	체육시설사업소		19,463	17,319	1,509	29	606
	거창골프장사업소		678	671	7	—	—
	거창사건사업소		1,743	1,723			20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면 총 이월액이 109,131백만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71,284백만원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집행 잔액도 37,264백만원에 이름.

☞ 물론 대규모 시설사업의 특성상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반복적인 이월이나 당초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의 부정확성으로 발생한 이월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며, 향후 사전 절차와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하고, 반복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함.

☞ 2024회계연도에 이어 2025회계연도에도 이월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음.

부 서 명	사 업 명
전략담당관	• 경남별장 조성, 의료복지타운 조성,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
인구교육과	• 거창 맞춤형 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 학교복합시설 설치사업
관광진흥과	• 남부권 특화진흥사업, 덕유산 둘레길 조성사업, 수송대 야행 관광 인프라 조성사업
행복나눔과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산림과	•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등산로 조성 및 관리사업, 스피드익스트림타운 조성사업, 거창 향노화힐링랜드 인프라 구축사업,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잔도길 조성사업
환경과	• 노후경유차량 폐차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폐기물 자원화, 소각시설 개선사업, 거창창포원 가치 증대 사업, 거창창포원 생태관광문화복합사업, 거창창포원 그린인프라 확장사업
건설교통과	• 주민편익사업 추진, 가뭄대비 용수개발, 저수지 유지관리, 기초생활인프라(소규모 용수개발), 관개시설 정비, 소하천 정비, 하천유지관리, 웅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군도 확·포장, 농어촌도로 확·포장, 도로 유지관리,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미불용지 보상,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도시건축과	• 도시계획시설 관리, 소규모 도로 관리, 지역개발지원(개발촉진지구지원사업),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가야문화권 특정지구 개발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법조타운 조성, 대동리 회전교차로 가로경관 개선사업, 도시재생사업
농업축산과	• 친환경 축산업 기반 확충, 가축분뇨자원화
농업소득과	• 딸기 명품화, 원예작물하우스 생산시설현대화 지원,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 지역 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
행복농촌과	• 신활력플러스 사업, 거창읍 동산마을 농촌공간정비사업, 가북면 플러스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일반농산어촌 마을단위 개발사업,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마을만들기 종합개발,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보건정책과	• 보건기관 그린리모델링 사업
체육시설사업소	• 스포츠파크 골프연습장 시설 개선, 체육시설 관리, 가조 파크 골프장 추가 조성, 제2창포원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7.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세 입(결산서 p527~614, 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

(단위 : 백만원)

과 목 \ 구 분		예산현액	징결정액 (A)	실제 수납액 (B)	정리보류액 (C)	미수납액 (D=A-B-C)
계		73,174	73,825	73,688	14	123
공기업	상 수 도	15,003	14,749	14,666	12	71
	하 수 도	24,198	24,229	24,215	0	14
	골 프 장	3,818	3,743	3,742	0	1
기타	의 료 급 여 기 금	1,089	1,085	1,085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	31	31	31	—	—
	산 업 단 지 조 성	14,404	14,438	14,438	—	—
	주 차 장 관 리	744	856	817	2	37
	댐 주 변 지 역 지 원	3,700	3,706	3,706	—	—
	수 질 개 선	5,018	5,014	5,014	—	—
	농 업 발 전 자 금	5,169	5,974	5,974	—	—

○ 세 출(결산서 p527~614, 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B)	이월액(C)	보조금 반납액(D)	집행잔액 (F=A-B-C-D)
계		73,174	73,825	73,688	14	123
공기업	상 수 도	15,003	14,749	14,666	12	71
	하 수 도	24,198	24,229	24,215	0	14
	골 프 장	3,818	3,743	3,742	0	1
기타	의 료 급 여 기 금	1,089	1,085	1,085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	31	31	31	—	—
	산 업 단 지 조 성	14,404	14,438	14,438	—	—
	주 차 장 관 리	744	856	817	2	37
	댐 주 변 지 역 지 원	3,700	3,706	3,706	—	—
	수 질 개 선	5,018	5,014	5,014	—	—
	농 업 발 전 자 금	5,169	5,974	5,974	—	—

8.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결산서 1권 p617)

☐ 이 용 : 해당사항 없음(결산서 1권 p618)

☐ 전 용(일반회계) - 결산서 1권 p619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전용액	비 고
		변경전	변경후		
합 계	6건			170	
경제기업과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행사지원금	1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인 체류시설 운영	사무관리비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5	
복지정책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사회보장적수혜금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	3	
행복나눔과	아동관련 활동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사무관리비	1	
행복농촌과	거창 별바람언덕 조성사업	재료비	시설비	80	
행복농촌과	감악산 꽃별 여행 행사 추진	재료비	사무관리비	50	

☐ 이 체

- 일반회계(결산서 p620)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이 체 금 액		비 고
		감 액	증 액	
237건	31,433	31,433	31,433	

검 토 의 건

□ 전 용(일반회계)

- 예산 전용은 총 6건이며 예산액 1,288백만원 중 170백만원을 전용하였음
- 예산 집행은 당초 예산 편성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적법하지만 여건 변화, 사업의 일부 변경 등 부득이하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경우
-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에 따라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에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예산 전용은 당초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한 지출 수요를 보충함에 그쳐야 하고,
-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은 의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아 불필요한 예산 지출, 낭비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지양할 것을 결산 검사에서도 권고하였음.

- 6건의 전용 사업 대부분이 사업의 필요성 등을 위해서 적절하게 전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추경이나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함.
- 차후 전 부서에서는 예산의 전용 시 상기 권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기 바람.

□ 이 체

- 예산 이체는 237건, 31,433백만원이며, 모두 일반회계임.
- 이체 사유는 모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또는 업무 이동임

9. 계속비 결산(3권-결산서 부속서류 p131)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당 해 연 도 집 행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합계(25건)	76,063	32,355	43,683	25
다누리복합문화센터 건립	3,000	14	2,986	—
지역활력타운 주거거점 조성	11,774	3,491	8,283	—
국민체육센터(시니어형) 건립	500	14	486	—
청년창업지원센터 신축	5,751	1,489	4,262	—
연극예술 복합단지 조성	190	—	190	—
거창아트갤러리 건립	3,150	431	2,717	2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45	45	—	—
스피드익스트림타운 조성사업	2,954	321	2,633	—
거창 향노화힐링랜드 인프라 구축사업	2,976	1,244	1,732	—
거창 향노화힐링랜드 잔도길 조성사업	4,738	1,873	2,865	—
기초생활인프라(소규모용수개발)	2,987	2,140	847	—
웅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9,366	5,413	3,953	—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	4,541	342	4,194	5
신활력플러스사업	2,744	2,612	114	18
북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123	87	36	—
남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123	87	36	—
웅양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123	85	38	—
위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123	87	36	—

세 부 사 업 명	당 해 연 도 집 행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농촌중심지활성화(일반지구)	483	362	121	—
농촌중심지활성화(농촌협약-거창읍)	3,882	1,996	1,886	—
기초생활거점조성(농촌협약-마리면)	2,421	546	1,875	—
기초생활거점조성(농촌협약-주상면)	1,426	872	554	—
기초생활거점육성(가북면)	2,741	2,227	514	—
거창읍 동산마을 농촌공간정비사업	9,602	6,513	3,089	—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	300	64	236	—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당 해 연 도 집 행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합계(1건)	12,684	9,379	3,305	—
거창 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2,684	9,379	3,305	—

검 토 의 건

-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계속비 집행 상황은 총 26건에 41,734백만원이며, 일반회계는 25건에 32,355백만원,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건에 9,379백만원임.
-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등)의 규정에 따르면 그 사업의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하며,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 26건의 계속사업비 이월 내역은 타당함.

10. 예비비 지출(결산서 1권, p639)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회 계	통 계 목	예 산 액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일반회계	합 계	8,381	2,138	1,843	271	24
	801-01 일반예비비	1,500	1,070	1,057	—	13
	801-02 재해·재난목 적예비비	6,881	1,068	786	271	11
	801-03 내부유보금	0	0	0	0	0

－ 특별회계

회 계	통 계 목	예 산 액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기타 특별 회계	합 계	73	0	0	0	0
	주차장관리	801-01 일반예비비	6	0	0	0
	수질개선	801-01 일반예비비	15	0	0	0
	농업발전자금	801-01 일반예비비	52	0	0	0

검 토 의 건

- 202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의 지출결정액은 총 26건에 2,138백만원이며 그 중 1,843백만원을 지출하고, 271백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백만원임.
- 통계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예비비(801-01)는 총 11건에 1,057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사유는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 열린음악회 개최 행사운영비임.
- 재해·재난목적예비비(801-02)는 총 15건에 786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사유는
 - 7.16~20. 호우 피해 복구사업
 - 3~4월 이상저온 피해 산림작물 복구비 지원
 - 5월 우박 피해 산림작물 복구비 지원 등임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호우 피해 재난복구와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지출은 사업의 목적에 맞다고 볼 수 있음.

11. 다음연도 이월사업(결산서 3권 부속서류 p173~228)

□ 이월사유별 현황(p.189)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예산현액	이월액	비 고 (%)
계		242	398,947	119,812	30
명시 이월	일반회계	75	118,531	36,815	31
	댐주변	1	2,400	250	10
	상수도	4	4,695	1,555	33
	하수도	7	7,983	1,463	18
사 고 이 월	일반회계	107	160,847	28,944	18
	산업단지조성	1	1,573	250	16
	댐주변	1	2,400	543	23
	상수도	5	7,684	1,902	25
	하수도	4	7,614	1,414	19
계 속 비 이 월	일 반 회 계	35	72,536	43,371	60
	산업단지조성	2	12,684	3,305	26

□ 전년도 이월사유별 집행현황(p.210)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전년도 이월액	지출액	불용액	사고이월액
계		234	98,594	68,050	19,001	11,543
명시 이월	일반회계	80	41,783	23,095	7,145	11,543
	댐주변	1	480	479	1	—
	상수도	3	3,335	—	3,335	—
	하수도	6	4,527	—	4,527	—
사 고 이 월	일반회계	138	47,567	44,143	3,424	—
	산업단지	1	333	333	—	—
	상수도	2	108	—	108	—
	하수도	3	461	—	461	—

검 토 의 견

-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예산의 융통성 있는 집행을 위해 세출예산 중에서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을 다 하지 못하고 남은 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 이월사유는 사업기간 미도래, 보상지연, 설계변경, 행정절차 지연, 기본계획 미확정 등임.
- 전년도 이월사유별 집행현황을 보면 사고이월 사업의 집행률은 91.8%로 비교적 높지만, 명시이월 사업은 집행률이 47.0%에 불과하며, 다시 사고 이월된 금액이 11,543백만원에 달함.
- 특히,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 명시이월액 7,862백만원과 사고이월액 569백만원은 한 푼도 집행되지 않고 전액 불용 처리되었음.
- 일반회계에서 이월된 11,543백만원은 2024년부터 집행되지 못한 예산인데, 2026 회계연도에도 집행되지 못하고 2027년으로 재이월이나 불용 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 명시이월 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이월 사유와 이월 금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사례의 경우 예산 편성 시 사업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이월을 최소화 하기 위한 효율적인 계획 수립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 계속비 지원사업, 특별교부금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절차의 이행, 보상절차 등을 조기에 완료하여 당해 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Ⅳ 기금결산(결산서 1권 p649)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㉑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㉒=㉑+㉓)
		계 ㉑ = ㉑ - ㉒	조 성 액 ㉑	사 용 액 ㉑	
계(9종)	76,984	△8,653	35,011	43,664	68,331
식 품 진 흥 기 금	132	△1	48	49	131
중소기업육성기금	4,605	△621	42	663	3,984
사 회 복 지 기 금	2,572	51	87	36	2,623
재 난 관 리 기 금	3,290	543	1,046	503	3,833
아름예술제진흥기금	525	12	16	4	537
옥외광고발전기금	355	28	33	5	383
체 육 진 흥 기 금	1,118	17	37	20	1,13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3,544	△9,229	32,971	42,200	54,315
고 향 사 랑 기 금	843	547	731	184	1,390

검 토 의 견

- 기금은 복잡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2025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9종으로써 전년도 말 조성액은 76,984백만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35,011백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43,664백만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68,331백만원으로 8,653백만원(11.2%)이 감소하였음.
-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9,229백만원 감소하였는데, 부족한 일반회계 재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재정안정화 기금에 편성하여 세입이 부족한 때에 이를 충당하여 사용함으로써 연도 간 재정 불균형 해소 및 군 재정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 향후 재정안정화기금의 적정 규모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임.
- 기금은 조성보다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집행이 미미하므로 향후 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필요함.

V

채권액결산(결산서 1권 p.858~862)

○ 회계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 해 연 도 발 생 액	당 해 연 도 소 멸 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11,098	5,257	5,196	11,159
일반회계	2,378	89	119	2,348
기타특별회계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8,720	5,168	5,077	8,811

※ 채권액은 원금 + 이자 기준임.

○ 채권종류별·사업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합 계		11,150	9	2,339	9	8,811	
보증금채권	회원권	133	—	133			
용자금채권	소계	2,133	9	2,133	9	—	—
	주택용자	178	—	178			
	공무원학자 대여금	1,844	—	1,844			
	기타(용자)	111	9	111	9		
기타채권	소계	73	—	73			
	기타	23	—	23			
	행정소송 승소금	50	—	50			
기타특별회계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			8,811	

검 토 의 건

- 전년도 말 채권 11,098백만원 → 당해연도 말 11,159백만원
으로 61백만원 증가, 일반회계는 30백만원 감소, 특별회계
채권은 91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5,257백만원의 채권이 새로 발생하고 5,196백만원이 소멸하였는데, 5,196백만원의 소멸은 실제 상환·징수에 따른 소멸액인지, 감면·면제·결손 등으로 소멸된 금액인지 확인 필요.
- 채권 원금은 11,150백만원, 이자 채권은 9백만원이며 공무원 학자금대여 채권이 1,844백만원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 2,339백만원을 세부적으로 보면 보증금채권 133백만원, 융자금 채권 2,133백만원, 기타채권이 73백만원으로 보증금채권은 콘도 회원권이고, 융자금채권은 공무원 학자금대여금, 주택융자이며, 기타채권은 행정소송 승소금임.
-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채와 마찬가지로 공공목적 달성, 이미 발행된 지방채의 상환, 천재지변 등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의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발행되며 세외수입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 지방채와 세외수입 비교

구분	채 권	세 외 수 입
발행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는 금원 및 사법적 계약에 의한 금원 등이 해당	지방세를 제외한 수입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임대수입등 사법적 계약에 의한 수입 지방자치법에 의한 사용료수입, 수수료 등 수입과 공법상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금전적 행정질서벌(과태료 및 과징금)에 의해 부과되는 금원 등이 해당
종류	보증금, 융자금, 미수금, 기타채권	재산임대수입, 매각수입, 사용료수입, 과태료와 과징금 등
관계	위와 같은 내용에 근거하여 회수시 세외수입으로 관리하고 잔액만 채권으로 관리	공유재산매각 수입이나 융자금 등 수입된 금원에 대하여는 세외수입으로 처리(채권에 의하여 관리하는 수입 포함)
관리	특별한 법규정을 제외하고는 민법 및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관리·회수	개별적으로 규정된 법규정에 의해 관리·징수
※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재산 매각 및 융자로 인하여 지원된 금원이 회수되기까지는 채권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부과·징수에 의하여 회수될 경우 세외수입으로 처리		

VI 채무액결산(결산서 1권 p863)

○ 해당사항 없음

VII

보조금결산(본예산)(결산서 3권 부속서류 p455)

－ 당해연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413,642	414,509	349,743	51,781	12,985
일반회계	국	196,836	196,848	175,627	14,885	6,336
	도	62,322	63,508	47,897	13,762	1,849
	군	138,073	137,738	112,953	20,691	4,094
기타 특별회계	국	5,218	5,218	5,200	—	18
	도	74	74	70	—	4
	군	1,216	1,216	965	250	1
공기업 특별회계	국	5,912	5,912	4,796	496	620
	도	1,318	1,318	457	861	—
	군	2,538	2,538	1,656	825	57
기금	국	—	—	—	—	—
	도	134	138	121	11	6
	군	1	1	1	—	—

－ 이 월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58,022	58,003	29,919	22,798	5,286
일반회계	명시 이월	국	7,780	7,780	2,223	5,429	128
		도	5,460	5,460	2,753	2,650	57
		군	9,339	9,339	3,483	2,133	3,723
	사고 이월	국	4,686	4,686	4,417	—	269
		도	2,689	2,679	2,262	—	417
		군	4,604	4,595	3,920	—	675
	계속비	국	7,554	7,554	3,284	4,258	12
		도	9,357	9,357	3,719	5,636	2
		군	6,220	6,220	3,525	2,692	3
기타 특별회계	사고 이월	국	—	—	—	—	—
		도	—	—	—	—	—
		군	333	333	333	—	—

검 토 의 건

- 수령한 보조금 414,509백만원 중 실제 집행은 349,743백만원으로, 64,766백만원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않아 보조금 집행률은 84.4%에 그침.
- 이월된 보조금은 수령액 58,003백만원 중 집행액은 29,919백만원(51.6%)으로 이월예산의 절반 정도만 집행되었음.
- 보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군비부담액은 141,493백만원으로 총 사업비 대비 34%에 해당됨.
- 보조금의 교부 자체보다 교부받은 이후 실제 집행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이므로 보조금 교부액을 과다 산정한 것은 아닌지, 사업량 감소나 사업계획 변경이 있었는데도 보조금 감액·반납 조치를 적기에 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VIII

기타 검토의견

- 결산은 사후적인 관계로 집행된 예산의 내용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적인 효과는 없음.
- 결산은 1회계연도 동안 운영된 예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사가 완료되어야 그 운영이 종결되므로 비로소 예산운영 주체에 대한 책임이 정치적, 행정적으로 종료된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결산심사는 합목적성, 합리성, 합법성을 심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의 예산집행 및 편성을 위한 지도, 감독,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있음.
- 재정 운용 기본방향은 재정 운용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 성과 창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가용재원 최대 확보, 주민참여를 통한 투명성 강화,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와 안전 환경 조성으로,
- 계속사업은 완공 위주로, 신규사업은 재원대책 마련 후 추진하고, 전략적 예산확보와 효율적 재원투입,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군정발전 전략추진, 지역경제 살리는 효율적인 재정회계 실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음.
- 2025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총 세입액은 1,090,697백만원, 총 세출액은 854,024백만원으로 잉여금은 236,673백만원임. 세입대비 21.69%가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것은 재정 계획과 재원 배분에 다소간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것임.
-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2024년 923,569백만원에서 910,03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4%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이전수입 규모가 일부 조정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임.
- 일반회계 세입결산 실제 수납액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 324,001백만원(35.8%)이고, 보조금 260,355백만원(28.7%), 조정교부금 31,456백만원(3.4%), 지방세는 41,905백만원(4.5%), 세외수입은 24,752백만원(2.7%)으로

- 우리군 재정은 자체재원(7.2%)보다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67.9%)의 비율이 9배 가량 높음.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총 세출은 854,023백만원으로 전년 (852,623백만원)대비 1,400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기능별로는 사회복지 172,446백만원, 농림해양수산 157,013백만원, 일반공공행정 87,828백만원 순이며,
- 전년대비 가장 많이 금액이 증가된 것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52.2%), 공공질서 및 안전(34.7%)분야이며, 보건분야는 전년대비 30.1% 감소하였음.
- 평균 집행률은 83.3%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이 64.3%로 집행률이 가장 낮음.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의 사업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재검토를 해서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나머지 예산을 최소화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더 높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특정 목적 및 시책추진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례 등에 근거하여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25회계연도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9종으로써 전년도말 조성액 76,984백만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35,011백만원을 합산한 111,995백만원이며, 사용액이 43,664백만원으로 2025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68,331백만원임.

- 당해년도 조성액은 35,011백만원이고, 사용액은 43,664백만원으로 기금조성에 비해 사용액이 8,653백만원이 더 많으며, 이는 정부의 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감소되어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에서 많이 사용하였기 때문임.
- 기금은 특수한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로 특정 자금을 보유·운용하여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 지나치게 남발하게 되면 예산집행을 감독하고 지출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2025년 일반회계 사업에 예산불용액 과다발생분은 사업별 집행계획을 자세히 검토하여 추경예산에 정리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추진되어야 하고, 보조사업비 반환금도 지난해에 이어 증가 추세여서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특히, 자활 성공 지원금 등 19건 123백만원을 전액 미집행한 것은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써 향후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 시 정리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2025년 예산편성 후 미집행 사업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비고
계	19건	123,051	0	123,051	
1	자활성공지원금	7,066	0	7,066	
2	효도수당 지급	100	0	100	
3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2,000	0	2,000	
4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1,050	0	1,050	
5	가출 여성 보호	600	0	600	
6	외국인 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400	0	400	
7	거창형 맘편한 돌봄사업	5,000	0	5,000	
8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1,100	0	1,100	
9	재난안전 민관협력 지원	2,000	0	2,000	
10	목재생산업 등록관리	1,835	0	1,835	
11	친환경 목재생산	82,000	0	82,000	
12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차지원 사업	4,000	0	4,000	
13	스마트강소농 활성화 시범	2,000	0	2,000	
14	안전관리인증 축산농가 및 영업장 지원	6,000	0	6,000	
15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200	0	200	
16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800	0	800	
17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1,200	0	1,200	
18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사업	1,500	0	1,500	
19	농촌형 소화전 관리	4,200	0	4,200	

○ 2025년도 일반회계와 국도비 보조금등반환금에서 세입예산 미편성 사례가 발생하였음.

- 연도 중 발생하는 반환금 등 변동 세입에 대해서는 발생 즉시 예산부서와 공유하여 추가경정예산에 적기 반영함으로써 예산과 결산 간 괴리를 최소화하고, 세입예산의 완결성을 확보해야 함.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미편성(1천만원 이상)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	과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합계		0	5,300
기획예산담당관	부동산교부세	0	194
관광진흥과	시도비보조금	0	1,928
복지정책과	민간융자금회수수입	0	18
건설교통과	시도비보조금	0	1,000
농업축산과	시도비보조금	0	723
건강증진과	시도비보조금	0	37
체육시설사업소	시도비보조금	0	60
전부서	국고보조금등반환금	0	1,293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0	47

○ 거창군에서는 27개의 전략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211개의 정책지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한 결과 달성 199개, 미달성 8개, 초과달성 4개로 작성되었음.

○ 성과목표 관리제도는 3개년에 걸쳐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하고 환류하는 제도로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시에는 사업목적과의 연관성과 결과 중심의 적성성, 목표 수준의 합리성에 역점을 두고,

-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하되, 달성이 불가능한 지표를 설정하여 미달하거나 목표를 낮게 잡아 초과하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함.
- 성과계획서 성과지표는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서의 정책사업 목표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해 회계연도 중 성과목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추경예산 편성 시 성과계획서도 동시에 경정하여 ‘수정 성과 계획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작성하지 않은 사례가 있음.
- 덧붙여,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였을 경우 해당 재산의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산림과에서는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로 파악된 53건의 공유재산에 대해 변상금을 미부과 하였음
- 향후 무단점유 사실 확인 및 점유자 청문 등을 통해 무단점유가 확인되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절차를 이행해 주길 바람.